

등록번호	기획감사실-8220
등록일자	2017. 06. 01.
결재일자	2017. 06. 01.
공개구분	비공개(5,6)

업무보고

주무관	감사계장	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
		대결 2017. 6. 1.	전결

제 목 : 공직기강 특별감찰 결과보고

제19대 대통령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공직자 선거중립 훼손 및 기강해이 사례 등의 폐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감찰 결과보고임.

I. 감찰개요

- 기 간 : 2017. 3. 14. ~ 5. 31.
- 대 상 : 전 부서(구 본청, 사업소, 동 주민센터)
- 감 찰 반 : 감사계장 외 4명
- 방 법 : 노출 · 비노출 병행, 예방위주 감찰
- 중점감찰내용
 - ▶ (정치중립) 정당 · 선거관련 정치행사 참여 금지, 주요 정책자료 등 정보 유출 엄단 등
 - ▶ (기초복무) 무단결근 · 무단이석, 허위출장 등 복무기강 해이
 - ▶ (부정청탁) 직무관련 금품 · 향응 수수, 법령 위반 또는 지위 · 권한을 남용하여 부정청탁 및 압력 행사
 - ▶ (보 안) 보안점검 이행 여부, 캐비닛, 책상 잠금 상태 등
 - ▶ (주민불편)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 불공정한 업무처리 실태 등
 - ▶ (당직 · 상황근무) 당직근무 무단이탈, 상황근무자 근무실태, 비상대응체계 확립 등

II. 감찰결과

- 행정상 조치 : 현지처리 9건(주의 9건)
- 재정상 조치 : 해당없음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III. 종합평가

- 이번 특별감찰은 조기에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 선거중립 훼손행위, 대민업무 소홀 및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음.
- 그 결과, 공직자 선거개입 등 선거관련 불법행위는 단 한건도 적발된 사례가 없었으며, 대다수 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기초복무관리,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및 본연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음.
- 그러나 일부 부서와 동주민센터 몇몇 직원의 경우 당직시간 미준수, 책상서랍·캐비닛 미시건,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대장 방치 등 기초복무 및 보안분야에서 미흡한 사례가 지적되었고,
- 특히 인감개인신고 수수료 일일결산 소홀, 수입증지요금계기 납부 수입금 지연 납입 등과 같은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는 대부분 신규 직원들이 관련규정 미숙지,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발생한 사항으로 여겨지는 바, 신규 직원에 대한 관리자의 관심 제고와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요구됨.

IV. 주요 지적사례

1.1 | 당직자 당직시간 미준수

■ 경비시설을 설치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은 민원 처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 1명을 연장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연장근무시간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구 동 연장(당직)근무시간은 08:30~09:00, 18:00~18:30으로 규정하고 있음.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 제6조의2(무인당직)
「구본청 및 동주민센터 당직근무 개선방안 검토 보고」, 총무과-9324(2011.4.12.)호

↳ 당직자 출근 지참 : ○○○(6분 지참), ○○○○(5분 지참)

↳ 당직자 조기 퇴근 : ○○○○(13분 조퇴)

1.2 | 퇴청시 보안점검 소홀

■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6조(서류보관 등)

↳ 수입증지발행관리대장 및 신청취소된 민원서류 방치 : ○○○○

↳ 캐비닛·문서고 미시건 : ○○○○○○

↳ 서랍 미시건, 사회복지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근무상황부 방치 : ○○○○

1.3 | 인감개인신고 수수료 징수 부적정

■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 수수료는 인감변경신고시 회당 600원으로 정해져 있음.

근거 「인감증명법」 제15조(수수료),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

↳ 인감개인신고 수수료 과소 징수(300원) : ○○○○

14 | 인감개인신고 수수료 일일결산 소홀

■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의 수입이 되는 증명의 발급, 인.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의 수수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증지요금계기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입증지금액,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고유번호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근거 「인감증명법」 제15조(수수료),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 사용)

↳ 인감개인신고 수수료 수입증지요금계기 인영 지연 : ○○○○

15 | 수입증지요금계기 납부 수입금 납입 지연

■ 수입증지요금계기 등에 의하여 납부된 수수료는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계기 및 민원발급기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그 사유를 기재 또는 입력하고 결손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제8조(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

↳ 수입금 납부 지연 : ○○○○

V. 조치계획

○ 행정상 조치

▶ 이번 감찰에 지적된 9건에 대해서는

- 경미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감사 규칙」에 의거
현지처분 처리

- 처리결과는 처리전말조서에 의거 2017. 6. 20.(화)까지 제출